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18호 2020. 2. 26.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31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3
- 정선군 고시 제2020-32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8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4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10
- 정선군 공고 제2020-166호 2020년 정선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12
- 정선군 공고 제2020-167호 2020년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21

○ 정선군 공고 제2020-17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26
○ 정선군 공고 제2020-207호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8
○ 정선군 공고 제2020-228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34
○ 정선군 공고 제2020-237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1
○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2호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5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31호

정선 군관리계획(모평 문화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07-197호(2007.09.21.)로 최초 결정되어 강원도고시 제2007-241호(2007.11.09.)로 조성계획 승인, 정선군 고시 제2015-60호(2015.08.04.)로 조성계획 변경 승인된 모평문화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강원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및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환경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2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정선군 핵심 관광거점인 모평문화공원 내 미활용공간에 새로운 기능인 목재를 컨셉으로 한 체험공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적합토록 공원구역 내 세부시설을 변경함

나. 위 치 :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다.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

라.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 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정선 군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공원 결정(변경) 조서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①	모 평 문화공원	문 화 공 원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16번지 일원	119,830	-	119,830	강원도고시 제2007-197호 (2007.09.21)	

나.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①	모 평 문화공원	◦ 세부시설 변경	◦ 정선군 핵심 관광거점인 모평문화공원 내 미활용공간에 새로운 기능인 목재를 컨셉으로 한 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에 적합토록 공원구역 내 세부시설을 변경함

다.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1)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동수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9,830	-	119,830	18동	감)6동	12동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시 설 용 지	소 계	53,660	감)601	53,059	18동	감)6동	12동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휴양시설	15,135	감)618	14,517	-	-	-	-	-	-	-	-	-	
	운동시설	1,169	-	1,169	-	-	-	-	-	-	-	-	-	
	교양시설	13,471	증)400	13,871	1동	증)3동	4동	471	증)467	938	471	증)986	1,457	
	편익시설	10,881	감)2,102	8,779	13동	감)9동	4동	874	감)738	136	1,256	감)1,120	136	
	공원관리시설	13,004	증)712	13,716	4동	-	4동	674	-	674	674	-	674	
	조경시설	-	증)1,007	1,007	-	-	-	-	-	-	-	-	-	
녹 지		66,170	증)601	66,771	-	-	-	-	-	-	-	-	-	

2) 공원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기호		위치	부지면적(㎡)			건축물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합 계			-		-	119,830	-	119,830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계			-		-	53,660	감)601	53,059	2,019	감)271	1,748	2,401	감)134	2,267	
휴양 시설	야유회장	a	a	16	4,842	감)101	4,741	-	-	-	-	-	-	-	
	쉼터	b	-	지구내	538	감)538	-	-	-	-	-	-	-	-	폐지
	정자	-	b	16	-	증)21	21	-	-	-	-	-	-	-	신규
	야영장	c	c	16	9,755	-	9,755	-	-	-	-	-	-	-	변경없음
	소계	-	-	-	15,135	감)618	14,517	-	-	-	-	-	-	-	
운동 시설	다목적운동장	d	d	16	1,169	-	1,169	-	-	-	-	-	-	-	변경없음
	소계	-	-	-	1,169	-	1,169	-	-	-	-	-	-	-	
교양 시설	온실	e	-	16	1,804	감)1,804	-	471	감)471	-	471	감)471	-	-	폐지
	목재문화체험관	-	e-1	16	-	증)866	866	-	증)831	831	-	증)1,350	1,350	신규	
	목공체험실	-	e-2	13	-	증)122	122	-	증)60	60	-	증)60	60	신규	
	야외교육장	-	e-3	13	-	증)497	497	-	-	-	-	-	-	신규	
	목공전시관	-	e-4	13	-	증)36	36	-	증)32	32	-	증)32	32	신규	
	트리하우스	-	e-5	16-6	-	증)36	36	-	증)15	15	-	증)15	15	신규	
	산림교육장	-	e-6	16-6	-	증)104	104	-	-	-	-	-	-	신규	
	목재놀이터	-	e-7	16	-	증)439	439	-	-	-	-	-	-	신규	
	허브원	f	f	16	3,432	증)68	3,500	-	-	-	-	-	-	-	
	생태습지원	i	i	16	6,132	-	6,132	-	-	-	-	-	-	-	변경없음
	관찰데크	j	j	16	543	-	543	-	-	-	-	-	-	-	변경없음
	탐방로	k	k	지구내	1,560	증)36	1,596	-	-	-	-	-	-	-	
	소계	-	-	-	13,471	증)400	13,871	471	증)467	938	471	증)986	1,457		
시 설 용 지	편의 시설	전망대	-	g	16-6	-	증)36	36	-	-	-	-	-	-	신규
		휴게음식점	l	l	16	2,484	감)2,384	100	774	감)738	36	1,156	감)1,120	36	
		주차장1	m	m-1	16	4,890	-	4,890	-	-	-	-	-	-	변경없음
		주차장2	m	m-2	7-1	3,156	-	3,156	-	-	-	-	-	-	변경없음
		주차장3	-	m-3	16-3	-	증)226	226	-	-	-	-	-	-	신규
		주차장4	-	m-4	16-5	-	증)20	20	-	-	-	-	-	-	신규
		화장실 및 샤워장	n	n	16	228	-	228	70	-	70	70	-	70	변경없음
		실내취사장	o	o	16	123	-	123	30	-	30	30	-	30	변경없음
		소계	-	-	-	10,881	감)2,102	8,779	874	감)738	136	1,256	감)1,120	136	
	공원 관리 시설	태양광패널1	-	h-1	16	-	증)241	241	-	-	-	-	-	-	신규
태양광패널2		-	h-2	16-3	-	증)841	841	-	-	-	-	-	-	신규	
창고		p	p	16-5	120	-	120	70	-	70	70	-	70	변경없음	
비지터센터		q	q	16-5	2,037	증)93	2,130	556	-	556	556	-	556		
입구광장1		r	r-1	16	426	-	426	-	-	-	-	-	-	변경없음	
입구광장2		-	r-2	16	-	증)474	474	-	-	-	-	-	-	신규	
입구광장3		-	r-3	16-6	-	증)223	223	-	-	-	-	-	-	신규	
배수지		s	-	16-3	723	감)723	-	-	-	-	-	-	-	폐지	
오수처리장		t	t	16	230	-	230	-	-	-	-	-	-	변경없음	
급수시설		u	u	7-3	1,975	-	1,975	-	-	-	-	-	-	변경없음	
관리사무소		v	v	16	78	-	78	48	-	48	48	-	48	변경없음	
도로		-	-	지구내	5,133	감)974	4,159	-	-	-	-	-	-		
보도		-	-	지구내	2,282	증)537	2,819	-	-	-	-	-	-		
소계	-	-	-	13,004	증)712	13,716	674	-	674	674	-	674			
조경 시설	잔디밭1	-	s-1	13	-	증)282	282	-	-	-	-	-	-	신규	
	잔디밭2	-	s-2	16-6	-	증)69	69	-	-	-	-	-	-	신규	
	데크길1	-	w-1	16-6	-	증)184	184	-	-	-	-	-	-	신규	
	데크길2	-	w-2	16-6	-	증)10	10	-	-	-	-	-	-	신규	
	데크길3	-	w-3	16	-	증)462	462	-	-	-	-	-	-	신규	
	소계	-	-	-	-	증)1,007	1,007	-	-	-	-	-	-		
총 계			-	-	-	66,170	증)601	66,771	-	-	-	-	-		

3) 건축물 조서

구분	시설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동수(층수)	구조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합 계			3,839	12(2)	-	1,748	2,267	-
기정	교양시설	온실	1,804	1(1)	RC조	471	471	시설 폐지
변경	교양시설	온실	-	-(-)	-	-	-	
신설	교양시설	목재문화체험관	866	1(2)	RC조	831	1,350	
신설	교양시설	목공체험실	122	1(1)	경량철골조	60	60	
신설	교양시설	목공전시관	36	1(1)	목구조	32	32	
신설	교양시설	트리하우스	36	1(1)	목구조	15	15	
기정	편익시설	휴게음식점	2,484	10(2)	RC조	774	1,156	시설 축소
변경	편익시설	휴게음식점	100	1(1)	RC조	36	36	
기정	편익시설	화장실 및 샤워장	228	2(1)	RC조	70	70	변경없음
기정	편익시설	실내취사장	123	1(1)	RC조	30	30	변경없음
기정	공원관리시설	창고	120	2(1)	RC조	70	70	변경없음
기정	공원관리시설	비지터센터	2,037	1(1)	RC조	556	556	센터부지 확장
변경	공원관리시설	비지터센터	2,130	1(1)	RC조	556	556	
기정	공원관리시설	관리사무소	78	1(1)	RC조	48	48	변경없음

4) 도로 결정 조서

가) 총괄표

구분		연장(m)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569	증)60	1,629	7,415	감)437	6,978	
도로	소로1류	77	-	77	1,202	-	1,202	변경없음
	소로3류	630	감)150	480	3,931	감)974	2,957	
보도		862	증)210	1,072	2,282	증)537	2,819	

나) 도로 결정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	-	1,629	6,978	-	-	-	
소로(5개 노선)			-	-	557	4,159	-	-	-	
기정	소로	1	1	10.3	34	774	진입도로	접근로	소로1-2	변경없음
기정	소로	1	2	10	43	428	시설연결	소로1-1	주차장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1	6	70	444	시설연결	소로1-2	비지터센터	변경없음
기정	소로	3	2	6	377	2,282	진입도로	소로1-1	위생처리장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2	6	378	2,284	진입도로	소로1-1	위생처리장	
폐지	소로	3	3	6	116	700	시설연결	소로3-4	배수지	
폐지	소로	3	4	6	67	505	시설연결	소로3-2	펜션	
신설	소로	3	5	6	32	229	시설연결	소로3-2	주차장	
보도(13개 노선)			-	-	1,072	2,819	-	-	-	
폐지	보도	3	1	3	76	229	보도	소3-2	쉼터1	
폐지	보도	3	2	3	51	151	보도	쉼터1	관찰테크	
폐지	보도	3	3	2	69	172	보도	온실	보3-1	
기정	보도	3	4	2	42	106	보도	주차장	입구광장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5	2	95	236	보도	입구광장	관찰테크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6	2	36	93	보도	입구광장	보3-8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7	2	63	161	보도	보3-8	관찰테크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8	2	38	98	보도	주차장	보3-9	변경없음
기정	보도	3	9	2	70	181	보도	관찰테크	보3-2	변경없음
폐지	보도	3	10	3	64	207	보도	소로3-2	펜션	
기정	보도	3	11	2	258	648	보도	관찰테크	보3-2	변경없음
신설	보도	3	12	3	134	402	보도	소로3-2	관찰테크	
신설	보도	3	13	1.8	40	73	보도	보3-12	입구광장	
신설	보도	3	14	3	78	235	보도	보3-12	비지터센터	
신설	보도	3	15	2.2	42	91	보도	소로3-2	소로3-2	
신설	보도	3	16	3.3	159	453	보도	보3-15	보3-15	
신설	보도	3	17	2.4	17	42	보도	보3-16	보3-16	

정선군 고시 제2020-32호

정선(북평)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

강원도 고시 제28호(2007. 2. 23)로 최초 결정 고시된 정선(북평)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2월 14일

정 선 군 수

가. 위 치 :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 970-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 2) 명 칭 : 정선(북평) 군계획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남평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시설명	군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세부시설명	면적(㎡)	기시행	금회시행(증설)	
도로	남평 공공하수처리시설	3,559㎡	■ Q=150㎡/일	■ Q=350㎡/일 (증설 Q=200㎡/일)	

라. 사업시행자 및 주소

- 1) 성 명 : 정선군수(상하수도사업소)
- 2) 주 소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

마. 사업기간

- 1)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2) 준공예정일 : 2022.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불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토지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이해관계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소유권이외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970-4	잡	3,559	3,559	봉양3길 21	정선군	-	-	-
계		1필지		3,559	3,559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147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고성리 139번지 일원
3. 공람개요 :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1개소 신설 (11,755㎡)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신동읍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0. 2. 12 ~ 2020. 2. 27)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신동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랑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0. . .
공 랑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랑 의 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공고 제2020-166호

『2020년 정선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과 자치역량을 높이기 위한 2020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2020년 정선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0. 3월. ~ 2020. 11월
3. 신청자격 : 주민 5인 이상의 모임·단체
※ 지원제외 : 강원도 마을공동체 1회이상 선정된 공동체
4. 지원 내용 : 마을공동체를 위한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비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사업비 등
※ 지원제외 : 단체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등)
5. 대상사업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자율사업

사업유형	세부사업(예시)
교육지원형	- 공동육아,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대상 인문학 강좌 등
문화예술형	- 문화행사, 플리마켓, 라디오, 마을신문 등 주민 기획·참여 문화예술활동
환경정비형	- 마을안전, 경관조성, 청소 등 주민참여 마을 내 환경 개선 활동
복지봉사형	- 아동, 노인, 다문화 등 소외되기 쉬운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활동
소득사업형	- 마을 내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 경제활동

- ※ 지원제외사업 : 마을공동체 사업취지에 부적합한 사업
- 일방적·수혜적 복지사업, 일회성·행사성 사업, 정치·종교적 사업
 - 단순 친목·영리목적 사업, 일반강좌 운영 사업 등

6. 지원규모 : 4개소 내외(1개소당 4,000천원 이내)
 - 사업비 산정은 1개소 당 4,000천원 이내. 자부담 5% 이상.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편성: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에 의함
- 지출 용도: 단체의 운영비지출은 불가, 사업비에 한정
- * 운영비 : 단체의 기본적 업무 수행을 위한 상근 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용품비

7.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7.(월) ~ 2020. 2. 27.(목) (11일간)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공동체소개서, 참여 서명부 등 포함) <붙임 >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접수시간 이내 도착 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정선군 경제과(560-2351)
 - (담당자 : 김은수 (이메일 : kes11518@korea.kr))
 - ※ 원본 서류와 함께 한글파일도 담당자 메일로 제출

8. 선정 및 발표

- 선정방법 : 서류 등 심사를 거쳐 선정
 - 심사항목 : 공동체성, 사업필요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 심사내용 : 신청사업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발 표 : 2020. 3월 중
 - 정선군 홈페이지 게재 및 공동체별 통보

9. 사업비 교부 및 정산

- 사업비 교부 : 공동체별 심사결과 결정된 지원금액 교부
 - 선정된 공동체는 신청서에 기재된 단체명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 체크카드 발급 · 사용
 - 공동체의 보조금 별도 계정 통장, 체크카드 등을 확인 후 사업비 교부
- 사업정산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군으로 제출

10. 기 타

-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중복 지원 불가
-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포기하는 경우 다음해 사업 선정에서 배제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하고,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
-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선군 경제과(033-560-2351)로 문의

붙임2

신청서 서식

2020년 정선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

구 분	지원단계	☐ 신규 ☐ 기존		
	거점마을	(정선군)	(읍·면·동)	(리·통·아파트단지)
공동체	명 칭		회 원 수	명 (남 명, 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소 재 지	(우편번호 :)		
	실 무 책 임 자	성 명 : E-MAIL :	전 화 : 휴대폰 :	
신청사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 필요성, 해당 아이템 선정 이유, 사업 전망 및 성공가능성 등을 간략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		
	사업내용	◦ 사업 추진할 내용을 요약 식으로 작성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자 부 담	천원 천원(보조금의 %)

2020년 월 일

공동체명 : (서명/날인)

정선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된 개인 정보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 1) 수집하는 개인정보 :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종료 시 5년(문서보존기간)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공 동 체 소 개 서

모이게 된 계기와 활동내용 등 소개

모이게 된 계기	※ 해당 모임이 생긴 과정, 시기 등				
공동체 목표·비전	※ 공동체의 장기적인 목표 또는 활동비전 등				
공동체 활동내용	※ 공동체의 주요 활동내용				
정부(지자체) 보조사업 추진실적 (2015~2019)	사업년도	사업명	지원액	지원내용	지원기관
	2016	2018 강원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주민모임'	5백만원 (자부담 10만원)	-	강원도
정기모임·회의	회의여부		☐ 있음 ☐ 없음		
	회의종류				
	회의횟수		회(주, 월, 년)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 추진기간

○ 2020년 월 ~ 2020년 월

4. 사업내용 소개

○

※ 마을 소개, 지역주민 의견(조사자료가 있는 경우) 등

○

※ 마을의 현재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점 등

○

※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사업을 통해 이루려는 목표 등

5. 세부 추진계획 * 동일내용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세부추진사업	일시/장소	세부내용
◦	◦ 계획한 특정일, 기간, 주기 등 작성 가능 ◦ 20.5.8. / 마을회관 ◦ 20.7월중 1회 / 서울	◦ 내용, 사업대상, 참여인원 등 ◦

6. 지역자원 활용방안

단 체 명	교류내용 및 참여확정 여부
◦	◦

7. 기대효과

-
-

8. 예산계획

- 총사업비 : 천원
- 보조금 : 천원
- 자부담 : 천원 (보조금의 %)
- ※ 구성 : 기부금(천원), 회비(천원), 기타(천원)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지출항목 (예산비목)	금 액	산 출 내 역
총 계			
보조금	소계		
	홍보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료		
	강사료		
	공연비		
	체험비		
	사업수행 인건비		
	식비/다과비		
	시설공사비		
자부담	소계		

※ 붙임1 보조금 예산편성기준 참고

※ 해당있는 비목만 작성

9. 참여주민 명단

2020년 정선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사업명 :)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겠습니다.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고
	성 명	주소(읍·면·동/리·통)	나이	성별	연락처	서 명	
1							대표자
2							간 사
3							재 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 필수사항 : 공동체대표자·실무담당(5인 이상 참여)

- 참여자 인적사항(주소 등)이 사실과 다를 시 공모사업에서 제외

※ 도 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시에는 10인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체명(대표자포함)으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167호

2020년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른 2020년 택시 노후차량 대차비용 일부 보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택시 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정 선 군 수

☐ 지원대상

- ① 공고일 현재 최종 소유기간이 현재 1년이상인 택시
- ② 일반택시 : 배기량(cc)관계없이 5년 이하차량
- ③ 개인택시 : 배기량(cc)관계없이 7년 이하차량
- ④ 신청기간내 교통사고 발생한 차량중 대·폐차 차량(1년내 중복수령 불가)
- ⑤ 사업량에 따라 조합에서 세부 지원대상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사업기간(신청기간) : 2020. 3. 1 ~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량 : 24대(개인택시 12대, 일반택시 12대)

☐ 신청자격 : 정선군내에 사업장주소지를 둔 개인 및 일반택시

☐ 보조금 지원기준 : 1대당 1,500천원

☐ 접수방법

- ① 접수기간 : 2020. 3. 0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② 접수장소 : 개인택시조합, 일반택시조합
- ③ 접수방법 : 직접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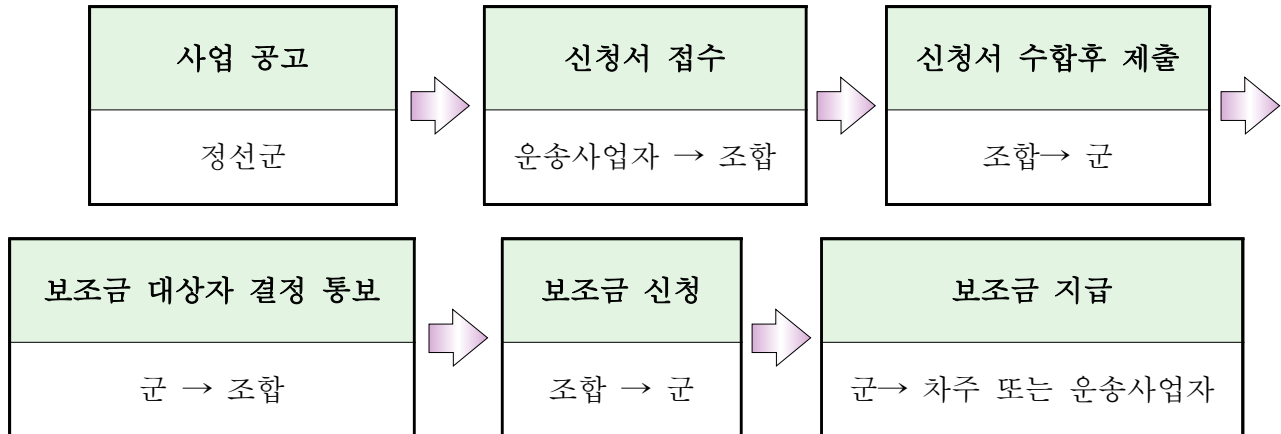
☐ 제출서류

- ① 노후 대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별지제1호서식)
- ②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 ③ 차량등록증 사본

④ 인감증명서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첨)

□ 지원절차



●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작성·신청

- 별지 제1호 신청서에 신청인 신분증 사본(운송사업면허증 사본), 차량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일반택시조합에 신청

※ 노후 대·폐차 후 전기차 구매 예정자는 제외

● 보조금 청구

- 별지 제2호 서식의 노후차량 대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택시조합 및 일반택시조합에 제출

1. 노후대차 보조금 지급청구서(제2호서식-민원인이 작성)
2. 신규등록증 사본
3. 통장사본
4.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5. 신규등록차량 사진첨부

[참고] 「별지 제1호서식」

노후 대차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회사명)		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소 속	개인, 일반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CC		
	⑨차명 및 형식	/		
위와 같이 노후 대차 보조금 지급 대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 면허증 사본 등 2. 차량등록증 사본 3. 인감증명서 4.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가 위의 ‘담당 공무원 또는 절차대행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참고] 「별지 제2호서식」

확인번호	노후 대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명 (회사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개인, 일반
신규등록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배기량()CC		
	차명 및 형식			
	보조금신청금액	원 (₩)		
위와 같이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대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신규등록증 사본 2. 통장사본 3. 이전 또는 폐차확인 사실증명서 4. 신규등록차량 사진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 별첨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등
- ◆ (수집 · 이용목적) 대차 보조금 지급 증빙
-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생년월일
- ◆ (보유 · 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법령 등
-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날인)

정선군수 귀중

정선군 공고 제2020-17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정 선 군 수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도시지역 일원
3. 규 모 : 변경 - 12개소 (도로 8개소, 녹지 4개소)
폐지 - 22개소 (도로 2개소, 공원 9개소, 녹지 11개소)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녹지)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고한읍사무소, 사북읍사무소, 신동읍사무소, 남면면사무소, 여량면사무소, 북평면사무소, 임계면사무소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2020. 2. 17. ~ 2020. 3. 03.)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각 읍·면사무소에 서면 제출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공람 · 공고 열람자 의견서

공 랑 건 명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		접수번호	
			접 수 일	2020. . .
공 랑 인 인 적 사 항	주 소			
	성 명			
	연 락 처			
토 지 소 재 지	위 치			
	면 적			
	기 타 사 항			
공 랑 의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 따라 열람·공고한 「정선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인)

정 선 군 수 귀 하

정선군 공고 제2020-207호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18일

정 선 군 수

1. 제정 이유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과 통학생,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에게 수요응답택시를 운행하여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운행방식 개편을 통해 효율적 교통시스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요응답택시 지원 및 범위 확립(안 제3조)

- 이용자 부담분을 명확화하여 예산 지원의 범위를 확립함.

나. 대상마을 및 이용자와 사업자 선정(안 제4조, 안 제5조)

- 수요응답택시 대상마을, 이용자, 사업자 선정에 통일성 및 공정성 확보.

다. 수요응답택시 운행 및 이용방법(안 제6조)

- 수요응답택시에 운행 경로와 이용자의 결제 방법을 구체화함.

라. 운행확인 및 지원결정(안 제7조)

- 사업자의 운행내역을 검토하여 향후 지원 여부 결정.

마. 수요응답택시 비용지급(안 제8조)

- 협약에 따른 비용지급방법을 결정.

바. 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등(안 제9조)

- 이용자의 부당 사용 및 사업자의 선정 취소 및 해지를 구체화함.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9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안전과)
- 전 화: 033-560-2164
- 팩 스: 033-560-2174
- 이 메 일: bjhbae@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환자의 병원치료, 직장인 출근, 학생 통학 등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요응답택시 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요응답택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농어촌버스 이용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 가. 해당 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적게 운행되는 지역
 - 나. 벽지·오지
2. “대상마을”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1호 각 목의 지역 중에서 수요응답택시(이하 “응답택시”라 한다)를 운행하도록 지정하는 마을을 말한다.
3. “사업자”란 군수가 정선군 응답택시 운행사업자 공모계획에 따라 그 신청자 중에서 해당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개인택시사업자 및 수요응답 면허(등록)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군수가 선정한 사업자의 응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마을 주민을 말한다.
5. “운행정보시스템”이란 군수가 응답택시 운행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선군 수요응답택시 운행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원활한 교통이용 편의를 위하여 응답택시 운행 및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답택시 운행요금(이하 “운행요금”이라 한다)에서 이용자 부담분 1,000원을 제외한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대상마을 지정) ① 대상마을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1km 이상 떨어진 다음 각 호의 마을로 한다.

1.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1가구를 포함한다)
2. 노선버스 운행횟수가 하루 세 차례 미만의 마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② 군수는 대상마을을 지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응답택시 운행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대상마을을 지정하거나 조정·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이용자 및 사업자 선정) ① 이용자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를 원칙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와 다른 가구 중 직장 출·퇴근, 타 지역 자영업 운영 등의 객관적 사유로 가구원들이 자가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소명(疏明)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용자로 선정할 수 있

다.

② 군수는 초·중·고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원도 정선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그 학생을 이용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노선버스가 없을 경우
2. 노선버스가 있어도 그 운행시간이 통학시간과 맞지 않을 경우
3. 해당 학교의 통학버스가 없을 경우

③ 군수는 읍·면 단위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와는 응답택시 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그 협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해당 기간만료 6개월 전에 새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④ 군수는 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벽·오지 지역 등은 필요할 경우 단체, 개인 등 마을거주 주민소유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협약에 의해 운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운행 및 이용방법) ① 응답택시의 운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행구간은 대상마을이 속해 있는 읍·면 소재지에서 해당 마을까지로 한정한다.
2.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에 제1호의 구간을 운행한다.
3. 운행횟수, 운행방법 등 세부적 운행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사업자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콜센터 또는 사업자에게 직접 이용요청을 하고 응답택시 지원 전용카드를 제시하고 개인부담 이용요금은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운행하되 이용자가 탑승한 지점에서 미터기 작동을 시작하고 하차한 지역까지의 구간을 이용자가 제시한 수요응답택시 전용카드로 카드결제기를 통해 미터요금을 결제한다.

④ 군수는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차량이거나 이용자가 아닌 개인이 임의적으로 탑승한 때에는 응답택시 운행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제7조(운행확인 및 지원결정)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단말기(TIMs)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비용지급) ① 군수는 응답택시별로 운행정보시스템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운행요금에서 이용자에게 지불받은 이용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협약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및 선정취소 등) ① 군수는 이용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답택시의 이용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빌려주는 등 부당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그 이용을 제한하고 이미 지원한 금액을 정산하여 되돌려 받는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응답택시의 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
2. 이용요청을 거부하거나 불친절한 때
3. 이용요금을 부정청구한 때
4. 협약기간 내 세 차례 이상의 민원발생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때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그 선정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을 정산하여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이후 3년 동안 그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응답택시 이용과 이용요금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해당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해마다 운행정보시스템에서 데이터를 분석 후 필요하다면 응답택시의 운행방법 등을 수정·조정 등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게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3항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운행요금 및 이용요금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228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2월 24일

정 선 군 수

1. 폐지이유

자치법규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괄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이 없는 조례 폐지(한국지역진흥재단 해산)

-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나. 유효기간 만료된 조례 폐지

-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3. 의견제출

○ 해당 자치법규 일괄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9일(토)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홈페이지, 이메일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기획실)

○ 전 화: 033-560-2228

○ 팩 스: 033-560-2592

○ 이 메 일: luisong8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등 일괄폐지조례안

제1조(「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의 폐지)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2조(「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조례

□ 정선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지역의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진흥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른 법인격을 가진 공익법인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

2.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조(재정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 데 필요한 서류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그 지급 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재단에 출금을 지급한다.

제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출금을 재단에 지원한 때에는 군 지역진흥에 관한 사업에 한정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8조(환수 등) ① 군수는 출금을 지원받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

2. 군 지역진흥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때

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나. 해당 사업의 중단

다. 목적달성의 불가능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② 군수는 재단이 제1항에 따른 환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환수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2713호 제정 2019.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재단에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출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화합 및 통합 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남녀 각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여성, 농업인, 학계, 경제, 종교, 문화, 환경, 복지 분야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서기는 행정담당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합의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범(凡)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2. 군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의 확산
3. 지역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4.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한 방안 제시

5. 그 밖에 군민통합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예산계상 등)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개정 2014. 11. 5. 조례 제23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⑩부터 <70>까지 생략

부칙<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ㆍ까지 생략

ㆍ 정선군 지역사회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ㆍ 부터 ㆍ까지 생략

정선군 공고 제2020-237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정선군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정 선 군 수

1. 제정이유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관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보호·육성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일부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정의)1호 및 2호 개정, 3호 신설

- 지역건설산업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규정 개정 강화

‘건설업과 건설용역법’을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으로 개정 확대

○ 안 제3조의2(분할발주 등)1항 개정, 제3조의2 2항 삭제 및 안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1항 개정, 2항 및 3항 신설

- 지역건설산업체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 개정 확대 및 분할발주 검토 의무화

○ 안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1항 및 2항 신설

- 지역건설근로자(건설기계 포함) 우선고용 권장 조항 신설

○ 안 제8조(구성)1항 개정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성별 균형 참여 명시

3. 입법예고기간 : 2020. 02. 25. - 2020. 03. 16.(20일간)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0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정선군수(참조: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 3길 21 정선군청 건설과장

○ 전화: 033-560-2162

○ 이메일 : cin1110@korea.kr

○ 팩스: 033-560-2099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로,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영위하는”을 “경영하는”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관내에 등록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정선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군수는”을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를 “검토·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의3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4 1항과 2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및 건설장비 불법 대여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정선군(이하 "군"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1.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 ----- 한다) 내에서 경영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 공사업, 건설자재 제조업--.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내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단서 신설>	2. ----- ----- ----- 경영하는 ----- . 다만,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관내에 등록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신 설>	3.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 근로자로서 정선군에 주민 등록지를 두고 90

제3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 가능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구분할이나 분할발주의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와

일 이상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분할발주 등)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

- 검토·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제3조의3(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권장)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업체와의 하도급 비율을 50퍼센트 이상

3.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

<신 설>

②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각 항 단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하도급 하는 경우 법 제28조의2 및 영 제30조의2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비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하도급을 다음의 비율로 이행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도급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50퍼센트 이상

2.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70퍼센트 이상

<신 설>

<신 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수는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해서도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의 확대를 권장할 수 있다.

제3조의4(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① 군수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② 건설업자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근로자 불법 고용 및 건설장비 불법대여 행위 등을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붙임] 관계법령 발췌

관계법령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분할발주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9조(공동계약)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상대자를 2명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경우로서 외국건설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한다)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5. 22., 2018. 12. 24.>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 5. 22.>
- 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공동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공동계약)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른 공동계약에 의하는 경우 해당 지역 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11. 20., 2014. 11. 19., 2017. 7. 26.>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 ①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 ①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 ② 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11.1.>
1. 도급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 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 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직접 시공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감리가 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감리를 수행하는 자로 하여금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 ⑤ 제4항에 따른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선군의회 공고 제2020-2호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정선군의회에 제출되어 심사예정인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9일

정선군의회회의장

1. 추진배경

- 정선군 향교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향교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 제2조)
- 향교 활성화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사업 (안 제3조, 제4조)
 - 전통문화 계승·교육 사업
 -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 사업비 지원신청 및 준용 (안 제5조, 제6조)

3. 예고기간 : 2020. 2. 19~3. 10(20일간 / 초일 불산입)

4. 조 례 안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3월 10일까지 정선군의회회의장(의회사무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6131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0(의회사무과)
- 전 화: 033-560-2506
- 팩 스: 033-562-5203
- 이 메 일: k3735872@korea.kr
- 홈페이지: <http://www.jeongseon.go.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교육 사업
2.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보조금의 교부·취소·실적보고·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향교재산법

- 제3조 (재단법인의 설립 등) ①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마다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 ② 향교재산 중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과 향사기구(享祀器具)는 기본재산으로 한다.
- ③ 향교재산 중 현금이나 그 밖의 동산은 유동재산으로 한다.
- 제5조 (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시·도에 있는 각 문묘(文廟)의 유지
 2. 교육이나 그 밖의 교화사업의 실시
 3. 유교의 진흥
 4. 문화발전에 대한 기여

□ 문화재보호법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보호구역 및 역사문화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민은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보호물이나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보존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 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지정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지정" 앞에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⑥ 삭제 <2015. 3. 27.>

○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